

● 제8장 주민생활지원

- 제1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 제4절 의료급여
-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제1절 금정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 추진배경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03.7.30)으로 区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06년부터 매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며,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

-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여건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야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중심의 복지구현을 위한 비전제시
-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구민의 복지욕구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 우리구 특성에 맞는 목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부문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별 수요 파악 및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방안 마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수립시기 : 4년마다 수립, 시행 전년도 6월 말까지 수립

- 1기(2007년~2010년) / 2기(2011년~2014년)/

나.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추진 실적



1) 저소득층 복지 및 자활분야

-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한 구인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구인·구직 한마당행사, 일자리 119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2,040개 일자리를 발굴하고 809건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 자 1,843명중 자활기업 참여 19명, 자활사업을 통한 취업연계 65명을 하였음.
-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 자금 8건 융자, 전세자금 41건 및 생업자금 2건을 추천하였고, 주거안정을 위하여 LH, 부산도시공사에 예비입주자 1,473세대 추천하였음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을 신속 발굴하여 661명에 대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사랑의 열매 지원사업으로 144명에게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 및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는 전문요원(4명)의 방문상담(4,076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후원자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수혜자에게는 이웃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후원자를 231명 발굴하여 수혜자 239명에게 1인당 3만원~15만원씩 지원하여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 노인복지 분야

- 독거노인 고독사 등 위급상황 조기발견에 의해 즉시 조치하고 독거노인의 신변안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코자 독거노인 24시간 안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복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분기별 1회로 개최함.
- 관내 독거노인 7,847명('13년12월기준) 실태조사에 따라 요보호 독거노인 대상자 644명을 선정하고 노인돌보미를 통하여 안전망을 구축, 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 상담·사례관리를 통한 지역 내 소외된 재가노인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고 재가노인의 일상생활편의를 증진코자 3개기관에 192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비 1백만원을 확보하여 만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였고,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교육1회, 자원봉사활동 1회 하였음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지원을 통해 657명에게 26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음.
-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77개소에 지원하였고 경로당 123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개소 2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노인복지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연 2회 회의 개최하였음

3) 장애인복지 분야

- 장애인의 복지시설 간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연금 등 지급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 체육 활동 지원 및 정 보화 교육 지원 등을 성공적 추진으로 장애인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

4)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 아동발달계좌 지원 및 홍보 : 월평균 438명, 예산집행 119백만원 집행
-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 연평균 2,576명, 예산집행 690백만원 집행
- 필수연계기관(경찰서,교육청 등)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구성·운영 되었으며, 위기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사항



관련 협의 등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위기 청소년의 범죄노출 등 2차 피해 예방 등의 적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신속한 구호 활동을 전개하였음

5) 여성·보육복지 분야

- 보육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조성코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4개소에 56백만원 지원하였고,
- 부모 육아부담 경감으로 영유아 보육 활성화와 고품질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4,548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음.
- 무료급식소 주5일 운영, 여성 합창단 육성, 사랑의 짐장나누기 행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하였음

6) 보건의료복지 연계분야

- 금정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학교 및 유관기관의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사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실적에 있어서는 대부분 초과달성을 하는 등 적절한 서비스가 이뤄졌다고 판단됨
- 사례관리,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의 대부분의 사업이 금정구 및 인근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제공되어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입지를 넓힘

7) 사업기반조성 분야

- 사회복지 제도 및 실무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민관협력을 통합 사례관리 구축으로 다양한 수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증가와 효율성을 증대하였음.

다. 2013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 7개부문 61개사업

부문별	구분	세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저소득층 복지 및 자활	일반사업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20	일자리 60개 창출
		저소득층 고용안정 지원	0	성과관리 참여자 취업연계
		융자사업 지원 및 홍보 강화	100	자금 지원, 홍보
		주거안정 지원	0	임대주택 연계 및 전세보증금 융자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실화	293	전년대비 20가구 증가 홍보 50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86	지원대상 가구 3%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683	사업장 발굴 및 대상자 선정 30개
		자활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70	30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적 기업 육성	300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저소득층 지원관련 전문 상담봉사원 운영	110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회적지지망 형성
	핵심사업	혼자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 실시	0	응급상황 긴급대처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20	건강보험료 월7,000원 600명 지원
노인 복지	일반사업	행복금정 천사구좌 후원 사업 추진	0	후원자 발굴 900명 수혜자 지원 600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0	정기적 방문상담, 이동 복지상담실 운영
		독거노인 24시간 안전네트워크 체계 구축	0	간담회개최, DB 업데이터
		장기요양 서비스 통합제공 시설 확충	0	일원화된 노인복지 서비스 정보창구 홍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지원	1	우수프로그램 지원
		긴급지원 및 무료급식 확대	240	무료급식 대상 10%확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	347	경로당 환경개선, 운영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	201	서비스대상 확대 돌봄종합서비스 제공
	핵심사업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실시	192	이동프로그램 실시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	0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성
		준고령자를 위한 노후생활 설계 프로그램	0	욕구조사 실시



부문별	구분	세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수행 목표치
장애인 복지	일반사업	장애인 복지시설간 네트워크 활성화	0	정기회의 개최 활성화프로그램 시행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2,620	부양수당,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	86	재활보조기구 수리 200건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 지원	중지	시 선정사업으로 시행 불투명
		장애인 생활지원 상담실	0	상담건수 150건 이상
		성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98	신규프로그램 2개실행
		장애인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0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0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10개소)
	핵심사업	장애인 이용 문화·체육시설 확보	0	이용자 참여확대 통합프로그램 시행
아동 · 청소년 복지	일반사업	아동청소년관련 지역사회 지원 연계 활동	0	청소년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홍보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욕구조사	폐지	유아가정으로 아동욕구조사는 시기상조
		지역아동센터 시간 연장	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발달 계좌 지원 및 홍보	106	매칭 대상자의 매칭율 90%이상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909	아동의 안정적 영양 공급 및 정서적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34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핵심사업	복지장학기금 확충	11	장학금 수혜자 확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증가	8	아동 심리적안정 증진 지역대학협력체계구축
		학교 폭력 성폭력 예방 대처를 위한 신고체계구축	2	학교폭력, 성폭력 신고체계 홍보활성화
여성 · 보육 복지	일반사업	어린이집 영아보육도우미 배치 운영	30	보육도우미 활동비 지원
		보육료 지원 강화	12,361	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만4세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시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340	협력기관 10개소
		보육시설 환경 개선	3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장애인아동 보육지원 확대	731	특수교사, 치료사 파견, 언어미술심리치료 지원
		영유아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1	다문화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 실시 및 보급

부문별	구분	세부 사업명	예산 (백만원)	수행목표치
여성·보육복지	일반사업	시설환경 우수 어린이집 선정	0	10개씩 선정 명패증정 시설우수 어린이집 공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72	사업 다양화와 활성화 육구총족 및 센터 육성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원 강화	765	운영 내실화, 입소자 대상 프로그램 실시
	핵심사업	여성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0	여성단체와 연계로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보건의료복지연계	일반사업	관내 노인시설과의 연계 확대	0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확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연계건수 확대	0	연계건수 2,200건
		의료급여 만성질환자 및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강화	0	의료급여일수 700일 이상자 중 300명 관리
		방문건강 관리 연계 프로그램 발굴	0	관련 프로그램 2개 발굴
		노인보건사업 활성화	47	치매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여성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21	여성건강검진 검사비 지원검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보건복지 네트워크 협력체계 활성화	0	의료서비스 제공의 표준 매뉴얼 실행
	핵심사업	아동 및 청소년 사업관련 정신보건센터 활성화	8	아동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사업기반조성	일반사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0	직무교육 실시로 역량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담당자 고용	중지	2013년 사업계획 없음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13	통합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핵심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개최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사업개요

가.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나. 사업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다. 사업 유형

○ 지역선택형 사업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지역개발형 사업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

〈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개발형 사업 비교 〉

구 분	표준형 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사업 개발	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복지부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2. 2013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사업현황(총 12개 사업)

- 지역선택형사업 2개 / 시개발형사업 9개 / 구개발형사업 1개

나. 총 예산액(1,071,342천원) ▷ 국비 750,012천원 시비 234,364천원 구비 86,966천원

- 지역선택형 200,504천원 / 시개발형 697,818천원 / 구개발형 173,020천원

다. 사업내용

- 지역선택형 사업(2)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동화야놀~자(스토리텔링)

- 市 개발형 사업(9)

▷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 홈티칭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돋는 학부모코칭 키울 Mom 난다!

- 區 개발형 사업(1) ▷ 노인맞춤형 운동 쳐방서비스

라. 이용 및 지원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2,210건

▷ 지역선택형 1,141건 / 시개발형 853건 / 구개발형 216건

- 지원실적 : 1,067,346천원 (국비 747,154천원 시비 233,535천원 구비 86,657천원)

▷ 지역선택형 200,504천원 / 시개발형 693,822천원 / 구개발형 173,020천원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라. 주요내용

-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2)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마.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 및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3)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단위: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1,173	486	185	502	

(4)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바.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24,612,830	
구 분	생계급여	4,529가구	18,445,595	수급자
	주거급여	4,206가구	4,332,414	수급자
	교육급여	1,220명	870,203	수급자 중·고 입학금, 수업료
	해산·장제급여	210명	150,779	수급자
	정부양곡	1,696세대	533,809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433세대	24,950	수급자, 차상위
	교육장려금	922명	255,080	수급자, 차상위 자녀

사.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시설 제외: 복지원과)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4,936	7,483	4,700	6,995	236	488
서 1 동	462	701	446	677	16	24
서 2 동	369	547	359	520	10	27
서 3 동	394	582	374	542	20	40
금 사 동	297	454	291	443	6	11
부곡1동	547	844	514	780	33	64
부곡2동	250	370	233	337	17	33
부곡3동	184	281	169	250	15	31
부곡4동	304	421	292	393	12	28
장전1동	188	285	182	278	6	7
장전2동	138	188	134	180	4	8
장전3동	249	341	247	337	2	4
선두구동	109	132	109	132	0	0
청룡노포동	170	253	162	232	8	21
남 산 동	771	1,253	706	1,114	65	139
구서1동	179	321	165	287	14	34
구서2동	290	469	283	454	7	15
금 성 동	35	41	34	39	1	2

아.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4.17%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3(월/만원)	57	97	126	154	183	211	240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계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등)	자활지원			
		계	자활근로사업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실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30,650,277	24,216,013	3,217,132	3,078,219	0	138,913



〈 지원 내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 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물급여 지급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고등학생 자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 년1회 125.9천원) 단, 2004년부터 37.5천원 지급(연1회)❖ 학용품비 : 연2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자녀 전원 (1인당 51천원, 학기당 25.5천원씩 2회)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500천원(쌍둥이 500천원 추가)
장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급자 의료급여1종 ↳ 전액, 의료급여2종 ↳ 85% ~ 90% 지원

2.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음.

가. 선정기준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도 판정 기준)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비 지급이 가능함.

나. 2013년 자활사업 내용

사업 유형	사업명 (주요사업 내용별)	실시방법	인원(명)					예산(천원) 계
			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공동체(7), 사업단 등(25)		507	365	50	31	61	3,553,803
	7개 공동체		21	13	3	1	4	234,803
광역 자활 기업	아가마지	부산시 광역자활센터	1	1	0	0	0	
	희망을 만드는 교실		6	4	0	1	1	
	광역간병 공동실		3	1	2	0	0	
자활 기업	청결나라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 자활 센터)	3	2	0	0	1	63,778
	한마음 농원		2	1	0	0	1	42,705
	해피 클린 청소		3	1	1	0	1	67,114
	척척 박사		3	3	0	0	0	61,206
	25개 사업단		486	352	47	30	57	0
시장 진입형	소계(4개 사업단)		37	21	5	2	9	0
	걸레 랑빗 자루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 자활 센터)	20	12	5	1	2	242,465
	정다운 도우미		5	2	0	0	3	70,019
	카페 휴커피 사업단		2	2	0	0	0	48,866
	꽃드림 화훼		10	5	0	1	4	138,748
인턴 도우미형	소계(3개 사업단)		65	38	19	1	7	0
	자활 도우미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 자활 센터)	2	2	0	0	0	23,306
	복지업무 도우미		13	3	3	0	7	143,000
	사회 복지 시설 도우미		50	33	16	1	0	495,000
사회 서비스형	소계(11개 사업단)		131	86	10	4	31	0
	장애 통합 교육 보조원	민간위탁 (금정구 지역 자활 센터)	10	6	1	0	3	116,669
	닥터 클린 소독 사업단		8	4	2	0	2	97,927
	행복 돌보미 간병		10	7	0	0	3	109,482
	자람터		45	35	1	3	6	471,176
	한울 토탈 하우징		10	6	2	0	2	133,540
	양곡 택배 배송 사업단		6	4	0	0	2	84,138
	예스 클린 청소		12	6	0	0	6	136,910
	인큐 전문(전문인력)		1	0	0	0	1	26,754
	결식 아동 도시락 배달		5	2	2	0	1	50,000
근로 유지형	수목 가꾸기 사업	구직 접시 행	20	14	1	1	4	195,414
	금정 도서관 도우미		4	2	1	0	1	40,000
	소계(5개 사업단)		93	77	13	3	0	0
	문안 도우미	구직 접시 행	21	20	0	1	0	152,000
	동 환경 정비 사업		28	18	9	1	0	202,000
성과 관리	공동 자립 장사업		7	6	1	0	0	51,000
	이용 시설 지원		28	26	2	0	0	202,000
	공공 시설 관리 지원		9	7	1	1	0	66,000
	희망 리본 프로젝트	취업연계 (광역자활)	80	50	0	20	10	0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동부 고용 센터	80	80	0	0	0	0



다. 대상자 참여사업 종류(자활역량평가표에 의거 분류)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희망리본	◆ 취업 욕구가 강한 사람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인턴·도우미형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사회서비스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근로유지형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3. 저소득 주민 보호

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음

(1)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 융자대상 : 보증금 9,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
 - 만19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융자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6,300만원 이내)
- 융자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 상 전입일중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해당주택 1년 이상 경과,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융자조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이율 : 연2%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 융자 제외자

- 부동산 또는 중형이상 자가용 소유자, 신용불량거래자 등
- 다른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 2013년 융자추천실적 : 36건 667,030천원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금정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자

○ 자금용도

- 영세상행위 자금, 재난을 당한자의 생계자금, 전세자금, 재학생 학자금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하

○ 융자조건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이자 : 연3%(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신용대출(1,000만원이하) : 재산세 2만원 이상인 자 1명
- 담보대출(2,000만원이하)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함

○ 취급은행 : 농협은행 구서동 지점

○ 2013년 융자실적 : 8건 75,000천원

(3) 생업 자금

○ 융자 대상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 1억원 이하인 자



- 용자용도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 취급은행 : 국민은행
- 연 이 율 : 연 3%
- 용자기간 : 5년거치(이자만) 5년 균등분할상환(원리금)
- 대출금한도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 범위내(5,000만원 한도 내)
- 대출유형
 - 무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는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1인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서 정한 적격 담보물 담보
- 2013년 용자실적 : 2건 30,000천 원

나. 영구임대·전세임대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철거세입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점수를 산정하여 지구별 예비입주자를 관리주체(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기 또는 추가 입주자 선정 요청 시 통보하고 있음

〈 예비입주자 추천현황(2013년) 〉

사업주체	사업명	추천세대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	227	
	전세·매입임대	776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	310	
	전세·매입임대	470	

다.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려운 세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음

〈 장학금 지급 실적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지급회수	중 학 생		고등학생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2013년	30명	11,250	1회	15명	3,750	15명	7,500

라.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단체로 금정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상·하반기 두 차례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순회봉사단 구성 : 8개 분야 약 8명(전문가 30명, 자원봉사자 50명)
 - ▷ 보건·의료분야, 이·미용, 장수사진촬영, 시력검진, 복지상담, 무료급식
-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
- 최초구성일시 : 2000. 6. 11.
-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운영회수	2회	2회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2회	2회
봉사인원	109명	114명	75명	193명	156명	61명	149명	160명	156명	158명
수혜인원	1,311명	1,354명	637명	1,943명	1,062명	820명	1,462명	883명	1,856명	1,679명



마. 이웃돕기 성금 모금

- 모금기간 : 2013. 12. 1. ~ 2014. 1. 31.
- 희망 2014 이웃돕기 모금실적

(단위 : 천원)

모금목표액	총모금액	성금총계	성 금		성 품
			일반성금	지정성금	
249,710	427,645	215,736	159,172	56,564	211,909

※ 2013년 모금액 351,161천원

바. 긴급지원제도 실시

(1)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1) / 보건복지콜센터(129)

(4) 지원기준

- 재산 135백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또는 150%이하
 - ▷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5)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1회),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6)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 단기지원원칙 :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3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399~ 6인 1,480	300만원 이내	1인 357~ 6인 783	1인 495~ 6인 1,8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생 교육비 • 연료비 : 88(동절기10 ~ 3월) • 해산비 : 600 • 장제비 : 750 •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 2013년 지원 실적

 - ▷ 360건 (생계182/의료118/교육10/연료46/장제2/해산1/전기1)
 - ▷ 지원금액 : 310,582,740원



제4절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제도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로 구성된 세대, ❖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및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2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세대

〈 의료급여현황 〉

(2013.12.31 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5,483	7,969	4,383	5,296	1,100	2,673
서1동	455	679	348	434	107	245
서2동	379	554	304	365	75	189
서3동	391	587	310	394	81	193
금사동	297	439	235	287	62	152
부곡1동	563	861	456	574	107	287
부곡2동	252	368	205	254	47	114
부곡3동	196	293	146	183	50	110
부곡4동	316	425	271	327	45	98
장전1동	196	298	132	163	64	135
장전2동	132	177	110	121	22	56
장전3동	207	286	171	198	36	88
남산동	768	1,250	553	695	215	555
구서1동	169	307	126	182	43	125
구서2동	298	465	209	256	89	209
금성동	35	42	29	34	6	8
선두구동	109	131	100	111	9	20
청룡노포동	170	254	128	165	42	89
복지시설및행려자	550	553	550	553	0	0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견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1차 의료 급여 기관 (외래)	의원	원내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25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처방조제			
	약국	직접조제	900원	900원	좌동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처방조제	500원	500원	
2차 의료 급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그 외의 경우	1,500원	총 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0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그 외의 경우	2,000원	총 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500원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 진료비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5절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노숙인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시설입소 유도 및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거리나 임시거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노숙인 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금정희망의집	서부로 40(서동)	39/41	7명	526-1033	

나. 부랑인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현원(명)	종사자수	전화번호	비고
사랑의 선교회	동부곡로5번길 134-9(부곡동)	7/9	4명	518-8425	개인운영

다. 시설입소시(노숙인 쉼터) 지원사항

- 안정적인 숙소와 식사제공(1인당 2식, 토·공휴일은 중식포함)
- 일자리 정보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
- 쉼터에 머물면서 저축을 할 경우 은행금리에 연3% 높은 금리추가 지급
- 쉼터에 계신분들의 독립적인 주거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주거지원
- 쉼터에서 운영하는 자립·자활프로그램 참여
- 질병치료, 약품 제공 등 의료혜택

라. 노숙인 및 부랑인 지원시설

- 응급잠자리 제공
 - 평일이용시간 : 연중계속 저녁 5시~다음날 아침 7시까지
 - 지원내용 : 잠자리, 긴급급식, 생필품(내의, 수건, 칫솔 등), 샤워·세탁 등
 - 문의 : 부산노숙인지원센터 ☎ 463-1127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무료진료소 운영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야간 18:00~21:00(화, 금요일)
- 진료내용 : 일반내과 등
- 문 의 : 사랑그루터기 ☎ 441-5662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임시잠자리, 긴급 급식, 생필품(칫솔, 면도기 등), 샤워 · 세탁 · 이발, 쉼터연계 및 고충상담 등
- 문 의 : 부산노숙인상담보호센터[동구 고관로 46(초량동)] ☎ 463-7707
부산노숙인지원센터[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 463-1127